

보도시점

2023. 9. 19.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

배포 2023. 9. 18.(월)

# 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9.19.)

-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 근거 마련 -

보건복지부는 9월 19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이하 사회보장급여법)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\*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「사회보장급여법」이 개정(2023.3.28. 공포, 9.2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(요청 및 제공 절차 등)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\*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

첫째,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**기간통신사업자\*가**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\*\*하도록 하였다.(제7조의 2 신설)

- \* 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(77개소, '23.4월 기준)
- \*\*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, 요청 목적, 제공받은 날짜 등

둘째,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**진폐재해위로금**,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(별표1 제29호 신설)

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"그동안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"라며, "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이동전화번호 연계 방안 2.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복지행정지원관	책임자	과 장	왕형진 (044-202-3140)
	급여기준과	담당자	사무관	정귀영 (044-202-3145)
	복지행정지원관	책임자	과 장	노정훈 (044-202-3120)
	지역복지과	담당자	사무관	한두희 (044-202-3123)





## 붙임

# 이동전화번호 연계 방안

#### □개요

○ 사회보장정보시스템(사회보장정보원)과 보편역무정보시스템(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)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이동전화번호 제공

#### □ 연계 흐름도 및 연계 절차

#### ○ 연계 흐름도



### ○ 연계 절차

- ① (지자체)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연락처 요청
- ② 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연락처 정보 연계 요청
- ③ (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) 기간통신사업자로 연락처 요청
- ④ (기간통신사업자) 연락처 확인 및 회신
- ⑤ (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락처 정보 회신
- ⑥ (지자체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연락처 정보 확인 및 문자발송